

偶發債務의 會計處理에 관한 考察

全 龍 基*

- | | |
|---------------|-----------------|
| 1. 研究의 目的과 方法 | 2. 會計의 目的과 達成方法 |
| 3. 發生主義와 保守主義 | 4. 偶發事件과 偶發債務 |
| 5. 偶發債務의 會計處理 | 6. 結論 |

1. 研究의 目的과 方法

會計(Accounting)를 한마디로 定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會計의 職能에 대하여도 그 동안 여러 學者에 의하여 여러 角度에서 分析되고, 檢討하여 各已相異한 定義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歷史的인主流를 살펴 보면 1941年에 美國公認會計士會(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에서 “會計는 財務的性格을 가진 去來나 事象을 意味하는 方法으로 貨幣에 의하여 記錄·分類·要約하여, 그 結果를 解釋하는 技術이다¹⁾”라고 定義하였다. 이 때만 하더라도 會計를 單純히 歷史的인 財務의 事件을 記錄하여 그 結果를 解釋하는 極히 限定된 範圍로 規定하고 있었다. 그러나 企業經營을 둘러 싸고 있는 經營環境의 變化와 會計技術의 發展에 따라 會計의 定義도 情報利用이란 方向으로 바뀌면서 未來事件의豫測을 위한 有用한 財務情報提供目的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1966年에 美國會計學會(A.A.A.)의 基礎的 會計理論에 관한 報告書(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一名 ASOBAT)에서는 “會計는 情報利用者가合理的判斷이나 經濟的 意思決定을 하는 데 必要한 特定會計實體에 관한 財務的情報를 識別·測定·傳達하는 과정이다²⁾”라고 定義하였다. 그리고 1970年 10月의 美國公認會計士會에서도 “會計는 서비스活動이다. 會計의 職能을 代替的인 여러 行動中에서合理的인 選擇을 하는 經濟的 意思決定을 함에 있어서 有用한 經濟實體에 관한 主

* 本研究所 研究員, 檀國大 商經大 助教授

1) AICPA, 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 No. 1

2) The Committee to Prepare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AA.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1966), p. 1

로財務의特性의計量的情報를提供하는 데 있다³⁾”라고하고있다. 이와같이會計의概念과職能이오늘날에와서는보다績極的이고廣範圍하게擴大되었다. 특히會計情報利用者が合理的判斷과經濟의意思決定을 할수있도록有用한情報to provide하는過程으로發展되었다. 더욱기經濟發展에따른資本市場의擴大發展및利害關係者集團의擴充으로인하여會計의機能이특히外部情報utilization의合理的인經濟의意思決定에有用하고誤判을막을수있는有用한會計情報提供으로크게轉換되었다. 이러한趨勢에따라經營實體의利害關係者에게有用한情報라면不確實한非數量的情報라도有用하고誤判을막을수있다면外部利害關係者集團에報告(公示)해야한다는方向으로轉換되었다.

그러나不確實한經營與件下에서經營活動을營爲하는企業에는여러가지豫測할수없는偶發性(Contingency)이內在해있는바, 이들偶發性의重要度가漸次增大되어量的으로도擴散되고있다. 이런現實에서合理的意思決定을함에있어서이와같은偶發性에대한識別·測定·傳達이없다면利害關係者를誤導(misleading)하게한뿐아니라, 이들의欲求를充足시켜주지못하게된다. 이와같은論理에서外部利害關係者集團, 특히證券有關機關(證券管理委員會, 公認會計士會 및 政府의政策機關등)에서는會計가이러한偶發性에대한情報を提供할수있도록여러가지措置를하고있다. 따라서偶發性에대한會計의機能은經營의不確實性과더불어더욱增大되고있다고하겠다.

이러한偶發性에대한會計問題는美國에서그重要性을認識하고AICPA의支援을받는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에서偶發性과관련하여在庫資產의偶發損益問題를ARB. No. 43의第6章⁴⁾에서一部檢討한후에, 1958年10月에偶發性에대하여綜合적으로研究하여研究報告書ARB No. 50⁵⁾을發表하였다. 이委員會를이어받은AICPA의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FASB)에서는좀더具體的이고包括的이며새로운問題를망라한研究를끝내고, 1975年3月에FASB Statement No. 5 “Accounting for Contingencies”를發表하였다. 그後1976年9月에偶發債務金額의合理的推定問題로FASB Interpretation No. 14.를發表하고있다. 美國의이러한 움직임에따라美國,英國,캐나다,日本등9個國의會計學者들로構成된國際會計基準委員會(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IASC)에서도1978年10月에國際會計基準IAS-10 “Contingencies and Events Occurring After the Balance Sheet Date”를發表하는등偶發性에대한會計問題가幅넓게研究되어왔다. 아울러企業會計實務面에서도社會의要請에따라實質的인情報提

3) AICPA, APB Statement No. 4 “Basic Concepts and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 (Oct. 1972) Chap. 2 Par. 40.

4) ARB No. 43 Chapter 6. “Contingency Reserve”

5) AICPA, ARB No. 50 “Contingencies”

供에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은 會計學界의 動向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企業會計基準을 改正하여 偶發性에 대한 會計處理를 先進外國과 國際會計基準에 準하여 處理하도록 制度的인 裝置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偶發性의 會計에 대하여는 問題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會計實務에는 어느 程度로 어떻게 運用이 되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本研究의 方法은 우선 各種會計學文獻을 中心으로 偶發性에 따른 會計問題를 認識하고, 우리나라 會計實務에 있어 組織의이고 오랜 歷史를 갖고 있으며 特有한 偶發性問題를 取扱하고 있는 金融機關의 偶發性에 대한 會計處理實態를 考察하였다.

2. 會計의 目的과 達成方法

모든 研究分野가 궁극적으로 追求하는 目的을 갖고 있듯이 會計도 어떤 目的을 갖고 있는 가를 살펴보자. 會計의 目的是 會計情報의 利用者에게서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會計情報의 利用者들은 經營實體 即 企業을 둘러 싸고 있는 많은 利害關係者들로써 内部利用者와 外部利用者로 大別해 볼 수 있다. 内部利用者로서는 經營意思決定을 擔當하는 經營者를 비롯한 經營內部人士들로서 이들을 위해서는 會計가 經營目的達成을 위한 各經營階層에 必要한 具體的 經營現況을 内部的으로 報告하고 管理會計(Management Accounting)의 形態로 이들의 經營管理目的을 達成시켜 주고 있다. 經營者의 計劃設計에 寄與하는 會計情報와 業務을 統制하는 데 寄與하는 會計情報로 나누어 진다. 企業内部利用者를 위한 會計의 機能은 充分한 目的을 達成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程度로 크게 向上되고 있으며, 會計情報を 손쉽게 控近할 수 있고 真實된內容을 把握하는 데 別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特性이 있다.

會計情報의 外部利用者로서는 經營에 參與하지 않는 株主, 債權者, 未來의 出資者, 買入, 賣出去來處, 政府機關, 일 반고객, 및 國內外研究團體등이 있다. 이같은 多樣한 利害關係者들의 제각각의 意思決定에 必要한 情報를 提供하는 것이 一般財務會計의 目的이다. 이들 外部利用者들은 企業實體의 經營內容을 소상히 把握할 수 없기 때문에 會計가 提供하는 會計情報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一般的으로 會計의 目的을 말할 때에는 外部利用者들의 要求에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外部利用者들의 會計에 대한 要求도 多樣할 수 밖에 없다. 더우기 最近에는 物價變動에 따른 會計情報を 提供할 것을 要求하는 外에 社會環境의 質을 保存해야 한다는 慾求가 增大됨에 따라 社會費用(Social cost)에 관한 會計情報조차 會計가 提供해 줄 것을 要求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經營環境 亦是 달리짐에 따라 會計에 대한 期待가 擴大되고 있어 會計의 外部目的을 定立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美

國의 AICPA 의 會計基準委員會(APB)에서 發表한 APB Statement No. 4에서 列舉하고 있는 會計의 目的을 보면 다음과 같다.⁶⁾

첫째, 企業經營實體의 經濟資源과 債務에 관한 信賴性 있는 財務情報의 提供
둘째, 企業의 利益創出活動에서 얻은 純資源(總資源－總債務)即 純財產의 變動에 관한 信賴性 있는 財務情報의 提供

셋째, 企業의 收益力(earning power)을豫測하는 데 도움이 되는 財務情報의 提供
넷째, 經濟資源과 債務의 變動에 관한 其他必要情報의 提供·殘餘額의 變動, 資金收支, 純運轉資本등에 관한 情報를 意味한다.

다섯째, 財務諸表利用者の 欲求에 맞는 財務諸表에 관련된 情報의 可能한 範圍內에서의 公示例를 들면 企業의 會計方針, 減價償却方法, 在庫資產評價方法 및 偶發債務에 관한 情報를 말한다.

이상의 會計의 主要目的에서 살펴 본 것처럼 偶發債務에 관한 會計情報의 要請이 不確實性下의 經營活動에 있어서 強力하게 摧頭되었다는 點이 物記할 만하다. 從前에는 過去와 現在의 財務情報의 提供에 關心이 있었을 뿐아니라 主로 數量情報에 대한 報告에 限定하였으나, 最近에는 未來豫測이란 觀點에서 不確實性과 偶發性에 대한 認識이 새롭게 摧頭되었으며 이는 會計의 測定機能과 公示機能面에서 새로운 要求를 하고 있다. 더욱이 情報의 質的水準의 充足을 위하여는 社會全體의인 真理, 定義 및 公正에 대한 倫理的 目標와도 關聯된다. 따라서 社會의 倫理的 目標가 發展되면 會計情報도 有用性있게 質的 向上이 要請된다.

會計情報의 質的 目標는 ① 目的과의 關聯性(Relevance) ② 理解可能性(Understandability) ③ 證憑可能性(Verifiability) ④ 中立性(Neutrality) ⑤ 適時性(Timeliness) ⑥ 完全性(Completeness)을 充足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從前의 單純한 會計事實의 記錄과 解釋에서 벗어나 質的으로 完全한 會計情報를 測定하여 利害關係者들의 合理的 判断을 할 수 있도록 그 目的이 轉換되었다. 特히 會計情報은 直接 對하기 어려운 外部利害關係者의 利害保護에 힘쓰게 되었다.

이러한 有用性있는 公完全한 會計情報가 測定되었으면 利害關係者에게 適切히 傳達되어야 誤解가 생기지 않고 잘 못된 意思決定을 防止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會計目的의 達成을 위해서는 會計情報의 測定과 利害關係者에게 適切히 傳達이 돼야 한다. 이러한 傳達過程이 適正公示 또는 完全公示(Full disclosure)로 達成될 수 있다. 會社情報은 理解하기 쉽고 또 잘 못된 解釋을 避할 수 있도록 題目, 科目, 金額은 意味가 明白하게 充分히 補完돼야 한다. 그리고 重要한 情報가 너무 龙大한 자질구레한 情報에 섞여서 重要性을 잊지 않도록 注意해

6) AICPA, APB Statement No. 4 (1970) Chap. 4. Par. 77-94

야 한다. 더욱이 多樣한 利害關係者들의 相異한 目的을 同時に 充足시키는 데는 많은 問題가 따른다. 特히 公示內容에 있어 會計環境의 變化와 複雜性은 會計擔當者の 公示決定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企業公示의 主要內容을 보면 ① 重要會計政策의 要約, ② 從業員持株制와 같은 株式옵션制와 年金制度, ③ 會社가 關聯된 訴訟의 内容, ④ 偶發債務나 約定內容과 金額, ⑤ 提案된 合併이나 企業買受의 條件과 内容, ⑥ 非正常的인 危險과 不確實性, ⑦ 在庫資產과 設備資產의 再取得原價 등⁷⁾이며 特히 重要한 會計原則의 要約은 必須公示事項으로 主要內容으로서 ① 會計原則의 變更과 理由, ② 減價償却方法 ③ 在庫資產評價方法 ④ 外貨去來등에⁸⁾ 대하여 公示할 것을 要請하고 있다.

企業의 公示內容은 財務諸表에 表示한 會計期間동안에 일어 난 去來事實에만 局限된것이 아니라, 貸借對照表日以後부터 財務諸表公表前까지에 일어 난 重要 後續事件도 包含해야 한다. 例를 들면 原材料價格의 急激한 下落, 企業의 主要部門의 賣却이나 廢棄 및 重要法의 節次의 解決이나 提起등은 企業의 收益性이나 財務狀態에 重要한 影響이 미치므로 반드시 財務諸表에 公示해야 한다. 適正公示와 關聯하여 요즈음 美國에서도 企業의 海外에서의 政治的獻金이나, 賂物등 贈收賄事件등으로 企業公示에 大混亂을 겪고 있다.

그러나 企業公示의 必要性은 다음과 같은 理由로 因하여 더욱 增大되고 補強될 것이다.⁹⁾

① 企業環境의 複雜性(Complexity of the business environment) : 企業合併 및 結合, 年金制度, 리ース, ② 收益認識, 投資控除制度, 各種옵션制度 및 稅金의 移延등 經營環境의 複雜성이 增加되므로 이를 要約된 財務諸表報告書로 集約할 수 없다.

③ 適時情報의 必要性(Necessity for timely information) : 過去의 情報보다는 適時性 있는 現在의 情報와 未來豫測의 情報를 要求하고 있다.

③ 統制와 監督手段으로서의 會計(Accounting as a Control and Monitoring Device) : 政府는 經營補償, 環境汚染, 特殊關係人과의 去來, 故意의 誤謬나 不法行爲등을 大衆에 公示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이러한 企業公示內容은 ① 計定殘額 ② 註記 ③ 註釋의 세가지 方法¹⁰⁾에 의하여 公示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④ 附屬明細書가 더 重要한 公示方法으로 利用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企業公開政策에 따라 投資者保護를 위하여 企業會計基準에 많은 註記·註釋事項을 附屬明細書와 함께 要求하고 있다. 모두 15項目의 本文註釋事項과 4個의 註記項目

7) APB Opinion No. 22, "Disclosures of Accounting Policies" AICPA (1972)

8) Kieso and Weygandt, "Intermediate Accounting" 3rd ed. 1980 p. 1220

9) Kieso and Weygandt, "Intermediate Accounting," 3rd ed 1980 p. 37

10) FASB Statement No. 5 "Accounting for Contrugencies" Part. 1

외에 11個의 補充的註釋事項을 定하고 있다. 이중에서 本論題와 關聯있는 事項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註釋事項 :

(1) 貸債對照表本文註釋事項 : 提供받은 擔保 및 保證內容

(2) 補充的註釋事項 :

① 繫留中인 訴訟에 관한 内容과 展望

② 天災, 地變, 重大한 事故, 罷業, 火災 등에 관한 内容과 結果

③ 資產에 附保된 保險以外의 加入保險의 内容

④ 偶發債務의 金額과 内容.

⑤ 貸借對照表日後 發生한 事項으로서 財務諸表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것에 관한 内容.

2) 註記事項 : 割引어음과 背書어음의 註記

3. 發生主義와 保守主義

企業會計의 損益計算의 가장 基本이 되는 原則으로 收益과 費用의 歸屬事業 年度區分을 發生主義(accrual basis)에 따라 處理한다. 現金主義에 의한 會計處理는 損益과 無關한 現金去來가 많고 信用社會의 發達로 損益活動과 現金收支는 時間의으로 分離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期間損益의 正確한 計算을 위해서는 收益과 費用을 發生한 事業年度에 따라 會計處理하는 것이 合理的인 損益計算方式이다. 따라서 損益計算의 方法이 現金主義段階에서 半現金主義段階를 거쳐 이제는 發生主義의 原則에 의한 合理的인 方法으로 轉換하였다.

그러나 收益의 境遇에는 發生主義를 기본으로 하되 收益價值의 發生을 客觀的으로 確實히 評價할 수 있는 어떤 根據가 생기는 時點에서 收益을 認識하는 것이妥當하고 確實하다고 하여 收益은 實現主義를 加味하고 있다.

經營環境의 不確實性과 會計測定上의 不確實性이 會計의 保守主義를 낳게 한 根據가 되었으며 經營主나 企業의 樂觀主義傾向을 憲解해야 企業現實을 옳게 判斷할 수 있다는 論據에 依據하여 會計의 保守主義는 會計實務에 強烈한 影響力を 미치고 있다. 保守主義는 論理的인 缺陷을 갖고 있기 때문에 會計原則으로 認定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會計原則이나 會計實務에 아직도 影響력을 미치고 있다. 費用이나 損失은 發生되면 可及的 빨리 發生期間에 歸屬시키고, 收益은 確實히 實現했을 때에 認識함으로써 利益의 過大計算과 樂觀的인 財務狀態의 報告를 防止하자는 保守主義가 會計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確實히 樂觀的인 經營者의 見

解를 경제하고 신중한 意思決定을 하는 데는 保守主義에 따른 財務情報가 有用한다.

結果的으로 收益과 費用은 發生主義에 따라 會計處理하되 保守主義의 影響을 받음으로써 損失과 費用은 發生期間에 徹底하게 認識해야 健全한 會計處理를 期할 수 있겠다. 그러나 保守主義는 主觀的 判斷에 따르게 되며, 客觀性과 繼續性의 維持가 損傷되기 때문에 批判의 對象이 되고 會計原則으로 認定을 못 받고 있는 實情이다.

4. 偶發事件과 偶發債務

偶發事件(Contingency)이란 “하나 또는 둘이 상의 未來事件이 發生하거나 또는 發生하지 않게 될 때에 비로소 그 궁극적인 結果가 그 企業에 可能利益(偶發利益)이 될지, 또는 損失(偶發損失)이 될지에 대하여 不確實性을 안고 있는 現在與件, 狀況 또는 一聯의 環境”¹¹⁾을 意味한다. 이와같이 貸借對照日現在의 어떤 不確實한 條件이나 狀態로서 그로 因한事件이 未來에 發生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財務諸表에 다른 影響을 미치는 事件들을 말하는 것으로 事件의 結果가 企業에 利得이 되는 것이면 偶發利得(Gain Contingency)이라 하며, 損失이 되는 것이면 偶發損失(Loss contingency)이라고 한다. 이러한 偶發利得이 생긴 경우에는 資產價額의 增如나 負債의 減少를 隨伴하게 될 것이다, 反面에 偶發損失이 생길 경우에는 資產價額의 減少로 나타나든가 아니면 債務의 增如로 나타난다. 特히 偶發損失로 因하여 負債가 增如한 경우의 債務增如를 “偶發債務(Contingency Liability)”라고 한다.

企業經營에는 많은 不確實性이 介在하고 있다. 이 모든 不確實性이 모두 偶發性을 뜻하지 않는다. 偶發性은 그러한 事件이 將來에 發生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것을 意味하는 不確實性에 反하여 事件은 存在하였는데 金額推定이 不確實한 경우는 偶發性이 있는 것이 아니다. 例를 들면 減價償却資產의 減價償却費計算은 推定은 介在되지만 偶發性이 아닌 것과 같다.

또한 負債은 그 測定의 確實性을 基準으로 確定債務과 偶發債務로 區分하기도 한다. 確定債務(determined Liabilities)란 그 存在와 金額에 不確實性이 없는 確定된 債務를 말하며, 偶發債務는 未來의 偶發의인 事件의 發生與否에 따라 確定債務가 될 可能성이 있는 特殊한 性質의 債務를 말한다. 偶發債務는 偶發損失의 結果로 생기는 結果이다. 債務의 基本要件인 ①支給할 金額 ②債權者 ③支給日 ④債務自體의 存在의 4 가지중에서 하나 또는 둘以上の 要件이 偶發事件에 따라 決定되는 債務를 偶發債務라고 한다.

企業의 財務狀態와 經營成果를 나타내는 財務諸表의 作成에 이러한 未來의 偶發性에 대한 考慮를 할 必要가 있다. 왜냐하면 企業會計의 目的中에 主要한 것은 企業의 將來를 豫測하는 有用한 會計情報률 提供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일어 날 偶發事件에 關心을 안 갖을 수 없

11) FASB Statement No. 5 “Accounting for Contingencies”

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계는 이러한 偶發事件에 대한 회계情報提供의 必要性은 회계目的의 變遷에 따른 自然의이며 必然의인 要請의 結果이다. 특히 環境與件과 더불어 各種 새로운 形態의 經營活動이 展開되므로 因하여 偶發事件에 대한 利害關係者들의 要求가 增加하고 있다.

偶發性에 따른 회계의 結果는 偶發利得과 偶發損失로 區分되어 偶發損失의 結果로 債務가 增加하는 偶發債務가 생긴다. 企業會計에 強力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 保守主義를 包含한 發生主義會計에 따르면 偶發利得보다는 偶發債務에 대한 會計處理에 많은 重點을 두고 있으며, 特히 利害關係者中에서 外部利害關係者인 株主와 債權者保護에 힘쓰고 있다.

偶發利得은 偶發性을 갖고 있는 하나 또는 둘以上의 未來事件으로 因하여 企業에 利得이 생기고 資產의 增加나 負債의 減少結果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한다. 例를 들면 訴訟에서 勝訴한 경우나 듣가 贈與에 의한 利益이나 債務免除에 따른 利益등이 偶發事件에 따른 利益의 發生이다. 이와 같은 偶發利得의 發生은 一貫하지도 않고 重要性에 비춰 볼 때 重要性도 크지 않으며 保守主義原則에 따라 實現될 때까지 會計處理하지 않는다. 그러나 財務諸表利用者에게 重要한다고 判斷하면 計定殘額으로 記帳하자는 못 하드라도 註釋등의 方法에 의하여 適切히 公示해야 한다고 본다.

偶發利得에 대한 會計處理는¹²⁾

① 通常의으로 偶發利得을 招來할 수 있는 偶發事件은 計定에 反映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利益의 實現前에 利益을 計上하기 때문이다.

② 偶發利得을 招來할 수 있는 偶發事件은 適切한 公示가 돼야 한다. 다만 收益實現의 可能性에 대한 誤解를 防止할 수 있도록 注意해야 한다.

偶發債務과 같이 債務의 要件中에서 하나 또는 둘이상이 未確定되었으나 將來의 支出이 豫定된 것으로서 費用負擔의 公平을 期하기 위하여 設定된 것으로 推定負債라는 것이 있다. 推定負債는 그 性質에 따라 다음과 같이 區分된다.

첫째, 負債로 確定된 있으나, 그 金額이 確定되지 않았기 때문에 金額確定時까지 充當金으로 設定하고 있는 負債인 納稅充當金(allowances for taxes)이 代表적인 것이다.

둘째, 언젠가는 支出 또는 用役提供을 하게 될 發生費用에 대한 費用의 期間配分의合理化를 위해서 豫測費用을 計上하므로 생기는 負債性充當金으로는 修繕充當金, 退職給與充當金등이 있다. 或者는 品質保證充當金과 損害賠償充當金을 여기에 包含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充當金은 偶發債務라고 봄야 한다.

이러한 推定負債는 偶發債務과 債務形成要件中一部가 未確認되었다는 點에서 類似點을 갖

12) FASB Statement No. 5

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點에서 그 差異가 있다.

첫째, 損失 또는 費用發生事實의 現存與否의 差異이다. 推定負債의 경우에는 費用이나 損失의 發生이 存在하나 金額이 確定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反面에 偶發債務는 將來에 偶發事件이 어떻게 發生될 것인지를豫測할 수 없으며 現在에 存在하지 않으므로 期間費用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費用이나 損失로의豫測可能性에 差異가 있다.豫測可能性이 크고 當期의營業活動과 因果關係가 있으면 推定負債이고豫測可能性이純粹하게 外部與件에 左右되므로豫測할 수 없는 것을偶發債務라고 한다.

세째, 企業側과 發生事由와의 關係面에서 推定負債는 經營政策등 經營方針으로 發生을 左右할 수 있으나偶發債定은 經營者가 統制할 수 없는偶發性에 起因되어 發生한다.

負債의 特性이 現在 또는 過去의 去來結果로써 他人에 대한 義務인데 反하여偶發債務는 未來의 事件에 따른 損失이며, 이의 會計處理는偶發損失을 防禦하는 장치가 아니다.

E.S. Hendriksen은 債務의 蓋然性(Probable Value)이 正(Positive)이면 負債即推定負債로서 金額을 推定해야 하나, 그 蓋然性이 낮은 경우에는偶發債務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¹³⁾

이러한偶發事件을 將來에 發生될 資產의 損傷(減少) 또는 負債의 發生(增加)을 確認할 수 있는 程度에 따라 다음과 같이 區分하고 있다.¹⁴⁾

- ① 蓋然性(Probable) : 將來事件이 發生할 可能성이 가장 높은 것
- ② 合理的可能性(Reasonability Possible) : 將來에 發生될 可能성이 蓋然性보다는 적고 稀薄보다는 높은 中間水準程度의 可能성이 있는 것
- ③ 稀薄(Remote) : 將來事件의 發生可能性이 가장 稀薄한 것

이와 같이偶發事件의 發生可能性에 따라財務諸表에 表示되는 能力を 달리 봐야 한다. 왜냐하면 번번히 通常의으로 일어나는偶發事件은 반드시財務諸表에 表示해야 할 것이지만 發行可能性이稀薄한 것은財務諸表本文에는勿論 表示하지 않고註釋등의 方法으로도 公示하지 않는다. 다만 保證과 같은 特別한 경우는例外적으로公示한다.

이러한 發生確率에 의하여 區分하는 것은 會計擔當者の健全한 會計의 判斷에 의하여任意의으로 決定되는 것이므로 그간의統計的 資料有無, 自社의 經驗이나 他社의 經驗 또는 情況을 參考로 해서 決定될 性質의 것이다. 이러한 區分은 매우 그 限界가 애매하겠지만 會計判斷할 때 하나의 基準役割을 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偶發債務의 種類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¹⁵⁾

13) E.S.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1970 p. 451

14) FASB Statement No. 5

15) Kieso and Weygnundt, op. cit. p. 449

첫째, 恒時發生하므로 計定殘額으로 表示할 수 있는 偶發債務.

이러한 偶發債務를 招來하는 偶發事件을 ①各種 債權의 回收 ②製品品質保證 및 製品瑕疵保證에 따른 保證債務 ③顧客에 提供한 謝恩品(Premium)

둘째, 경우에 따라 計定殘額으로 反映할 수도 있으나 大部分 註釋등 公示의 方法으로 表現할 수도 있는 偶發債務.

- ① 資產沒收의 危險
- ② 계류증이거나 쟁의증인 訴訟
- ③ 實際 또는 發生可能한 請求權(클레임)과 追徵金
- ④ 他人債務의 保證
- ⑤ 待期信用狀을 發行한 銀行債務
- ⑥ 賣却된 資產이나 債權의 再買入約定

이러한 偶發事件은 債務發生可能性이 蓋然性狀態(Probable)이며 合理的으로 損失金額을 推定可能하면 偶發債務로 計上하며 만약 이들 兩條件를 充足하지 못하면 單純히 公示의 方法으로 情報를 提供한다.

셋째, 發生可能性이 別로 없으며 計定殘額은 勿論 企業公示도 할 수 없는 偶發債務.

- ① 火災, 폭발, 其他災害로 因한 企業資產의 損傷危險
- ② 一般的이고 漠然한 企業危險
- ③ 再保險 또는 損災保險會社에서 引受한 災害損失危險

偶發債務의 會計處理는 財務諸表의 數字의 信賴性을 侵害할 不確實性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므로 推定負債와는 달리 財務諸表本文에 表示하기 보다는 別途의 公示方法에 의하여 利害關係者에게 情報를 提供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5. 偶發債務의 會計處理

1) 會計處理의 原則

偶發債務는 權利義務의 現實的인 發生이 없고 所有權의 變動도 없으므로 從來에는 會計의 對象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財務의 健全性을 判斷해야 하는 立場에서 偶發債務을 確認할必要性이 생기고 있으며 未來豫測을 하는 데는 有益한 情報이므로 이에 대한 會計處理를 要求하게 되었으며, 企業經營者側에서도 이들의 要求에 따라 會計處理를 하고 있다.

偶發債權에 대한 會計處理는 1975年3月에 美國의 FASB에서 “偶發事件의 會計處理方法(Accounting For Contingencies)”를 FASB Statement No.5로 發表함으로써統一된 規程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의 影響을 받아 國際會計基準委員會(IASC)에서도 “偶發事件 및 貸

借對照表日以後發生한 重要事件(Contingencies and Events Occurring After the Balance sheet Date)"를 IAS No.10 으로 發表하였다.

이들 會計基準에 따르면 偶發事件에 대하여 그 發生可能性을 基準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處理도록 定하고 있다.

1. 偶發事件으로서 다음 두 條件이 充足될 때에는 偶發損失을 損益計算書에 記入하여야 한다.

① 將來 發生할 possibility이 있는 偶發事件(蓋然性의 狀態)으로서 그와 關聯하여挽回할 수 있는 價額을 勘案하더라도 貸借對照表日現在의 資產에 惡影響을 미치거나 負債가 發生한 事實을 確認할 수 있을 때

② 結果的으로 發生할 偶發損失額을 推定할 수 있을 때

2. 앞의 1項의 ①과 ②의 兩條件이 充足되지 않을 때에는 損失發生의 possibility이 稀薄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偶發損失이 있다는 事實을 財務諸表에 公示하여야 한다.

3. 偶發利得은 財務諸表에 計上하여서는 안 된다. 偶發利得은 그것이 實現될 possibility이 큰 경우에 限하여 그 偶發利得이 있다는 事實을 公示하여야 한다.

4. 앞의 2項과 3項에 의거 偶發事件에 대한公示가 必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

① 偶發事件의 性格

② 將來의 結果에 대하여 影響을 미치게 될 不確實한 要因들

③ 財務諸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推定이나 또는 이와 같은 推定이 不可能하다는 說明

5. 이상의 偶發損失의 會計處理方法은 그 偶發事件에 대한豫想結果에 따라 決定된다. 만약 偶發事件이 企業에 損失을 가져올 possibility이 큰 蓋然性의 狀態(Probable)이면 財務諸表인 損益計算書에 그 損失을 計上하고 貸借對照表의 貸邊에 偶發 債務를 計上하는 것이다.

6. 財務諸表에 計上할 偶發損失은 그 偶發事件으로부터 招來될 損失의 범위에 대한 情報를 基礎로 推定할 수 있다. 損益計算書에는 이러한 損失의 範圍內의 最適推定損失(best estimate of the loss)을 計上하게 된다. 만약 최적추정치가 없을 때에는 그 推定損失範圍額中 最小金額으로 計上한다. 만약 偶發損失로 計上한 金額을 超過하는 損失이 發生할 possibility이 있을 때에는 追加로 露出된豫想損失도 公示한다.

7. 偶發損失을 推定하는 데 必要한 證據가 상충하거나 不充分할 때에는 그 偶發事件의 存在와 性格에 대하여 公示한다

8. 偶發債務가 그와 關聯된 對應請求權 또는 第三者에 대한 請求權이 있는 경우에는 그 請求權으로 因해 發生可能한 偶發損失을 減少해서 計上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請求權으로부터 補償받을 수 있는 金額을 考慮하여 偶發損失額을 決定하게 된다.

9. 擔保物의 有無와 金額, 割引된 換어음으로 부터 發生할 債務 및 企業이 責任져야 할 類似한 債務에 대하여는 비록 그로 因하여 企業에 대한 損失發生 可能性이 회박할 지라도 財務諸表에 公示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10. 一般的이거나 또는 不特定한 事業上의 危險에 대하여 計上하는 偶發損失은 貸借對照表日 現在 存在하는 條件이나 狀態와는 關聯이 없으며 따라서 偶發損失充當金으로서 正當化될 수 없다.

11. 財務諸表上 偶發生이 있는 金額의 決定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財務諸表에 計上되는 金額으로서 偶發性이 있는 것은 同財務諸表公表日現在 利用할 수 있는 情報를 基礎로 決定하는 것이다. 따라서 貸借對照表日以後에 發生한 事件으로서 貸借對照表日現在의 資產이나 負債에 영향을 주는 事件들은 그偶發事件을 認識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財務諸表에 表示할偶發事件의 金額을 決定함에 있어 考慮하게 된다.

② 경우에 따라서는偶發性이 있는 問題들을 個別的으로 認識할 수 있으며 또한偶發性을 隨伴하는 金額을 決定함에 있어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한 特性을 考慮할 수 있다. 예를 들면 企業에 대한相當한 程度의 外部請求權訴訟은 이와 같은偶發事件임을 指稱하는 것이다. 經營者가偶發事件을 評價함에 있어 考慮되어야 할 要因과 問題는 財務諸表公表日現在의 訴訟事件進行狀況, 法律專門家, 또는 其他顧問들의 意見, 類似한 事件에 대하여 그 企業이 겪었던 經驗과 유사한 경우에 처한 他企業들의 경험이 등이다.

③ 個別去來에 관하여偶發性을 招來시킨 不確實성이 餘他 數많은 類似去來에 共通의으로 適用될 때에는偶發性金額을 個別의으로 決定하지 않고 類似去來를 한 품으로 하여 一括決定하게 된다. 이와 같은偶發性去來의 例로는 賣出製品에 대한 品質保證 또는 回收不能債權에 대한 損失推定등의 類型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損失은 通常 빈번히 發生하는 것으로 그 損失을 惹起시킨 特定去來가 個別의으로 識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過去經驗에 비춰서偶發債務나偶發損失을合理的으로推定할 수가 있다. 이를 損失을 計上하는 것은 關聯된去來가 發生했던 會計期間에 그려한偶發事件이 存在하고 있었음을 認定하는 結果가 된다.

偶發債務와偶發損失의 會計處理에 있어서는 이를偶發事件의 發生可能性程度에 따라 區分하여 可能性이 蓋然性에 該當되고 損失額이 合理的으로 推定되면 正式의 計定處理에 의하여 財務諸表本文에 計定殘額으로 記帳되고 그렇지 못하면 適正公示의 方法에 의하여 利害關係者の 誤解가 없도록 適正하게公示된다. 따라서偶發債務의 會計處理에 있어서는 支給日이나 支給相對方을 알 必要是 없다.

아울러偶發損失金額이合理的으로推定可能해야 한다. 여러가지可能한 資料와 意見을 들어合理性있는 金額을 財務諸表에反映해야만 財務諸表의 信賴性을 侵害하지 않고 有益한 情報를 提供하는 信賴性있는 財務諸表가 될 수 있다.

2) 公示의 方法

偶發損失과 偶發債務의 認識基準인 蓋然性과 合理的推定可能性의 두 必須條件을 充足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適正公示의 方法에 의하여 財務諸表에 公示하여 利害關係者들에게 同情報를 提供해야한다. 다만 偶發事件의 發生可能性이 稀薄한 경우에는 保證등 特別한 경우를 除外하고는公示할 必要가 없다.

公示에 있어서는 ①偶發性의 性格과 ②損失 또는 損失의 範圍推定額中 最低額 아니면 推定할 수 없다는 說明을 明示해야 한다.

그리고 偶發事件의 發生 possibility이 稀薄하드라도公示를 해야 할 事項은

- ① 他人을 위한 債務의 保證
- ② 待期信用狀을 開設한 銀行의 債務
- ③ 賣出品 또는 賣出債權(또는 關係財產權包含)의 再買入約定(保證)등이다.¹⁶⁾

偶發債務에 대한公示方法으로는 앞에 說明한 一般公示의 方法外에 利益處分에 의한 留保利益의 別途設定(任意積立金의 設定)에 의한 方法이 있을 수 있다¹⁷⁾ 그러나 偶發債務에 대하여는 註釋에 의한公示가 가장 좋은 方法이며, 財務諸表利用者的 誤解를 막을 수 있도록充分한 說明을 할 수도 있다.

또한 貸借對照表日以後 貸借對照表公表前에 發生된 資產損傷이나 負債增加의 金額이合理的으로 推定可能하여 이를公示할 必要가 있다면 이러한 偶發損失이 貸借對照表日現在에 發生되었다고前提하여 推定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 既存貸借對照表와 함께 補充的 資料로公示할 수 있다. 推定貸借對照表를 既存貸借對照表의 表面에 欄을 追加해서 縱欄形式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3) 偶發損失(債務)의 會計處理

(1) 債權의 回收에 따른 偶發性.

賣出債權, 貸出, 其他 信用去來로 因한 債權에 대한回收에는 不確實性的 程度가 問題가 되며 貸損의 偶發性이 存在한다. 偶發性條件의 充足與否는 ①個個債權別로 하든 ② 또는 類似債權別로 考慮하는 關係敘으로 貸損可能性이 蓋然에 屬하고 合理的推定이 可能하므로 가장一般的으로 會計處理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모든 企業이 貸損充當金이라는 計定科目으로 會計處理하고 있으며 貸損充當金은 債權資產에 대한 差減的評價計定으로 認識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企業會計의 慣習인 듯 하다.

(2) 製品品質保證 및 環境補修保證

16) Kieso and Weygandt, op. cit. p. 456

17) Walter B Meigs A.N. Mosich, C.E. Johnson, "Intermediate Accounting" 4th ed. 1978 p. 416

販賣政策 및 營業政策上 物品의 品質保證 및 環境補修保證에 따른 偶發事件으로 因한 偶發損失에 대한 會計處理로 現在以前의 營業活動에 따른 次期에 發生可能한 損失로써 正確한 期間損益을 위해서라면 合理的으로 推定하고 發生可能性의 蓋然性에 따라 負債로 認識하는 方法이다.

推定偶發損失認識을 販賣時 또는 期末決算時에 하게 된다.

製品品質保證費 ×××

推定販賣保證負債 ×××

이는 이미 存在한 去來에 따라 發生되는 것으로 严格히 區分한다면 偶發債務가 아니라 推定債務인 負債性充當金으로보는 것이 合理的일 듯 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大部分의 企業이 偶發債務를 會計處理하지 않고 損失發生時에 當期의 特別損失 또는 營業費用으로 處理하고 있다.

(3) 製品에 의한 被害補償

醫藥品이나 장난감등 製品의 賣出에 따라 賣出製品의 缺陷으로 因하여 傷害또는 被害를 입고 被害를 補償해 왔을 경우에 偶發債務의 2 가지 要件을 充足하면 損失과 債務로 認識해야 하며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公示한다.

(4) 顧客에 提供된 謝恩券(Premium)

販賣促進目的으로 謝恩券을 發行하여 商品販賣時 交付했을 경우 同謝恩券이 期末現在顧客이 保有하고 있는 것에 대한 偶發事件에 대한 會計處理로 이것 亦是 2 가지 要件이 充足될 수 있으므로 財務諸表에 計上한다.

謝恩品費(또는 販賣費) ×××

推定謝恩品提供義務 ×××

이 亦是 偶發性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會計慣習으로는 偶發債務로 認識하지 않고 販賣費로 支給時에 會計處理하고 있다.

(5) 訴訟, 請求權(클레임) 및 追徵金.

現存하는 訴訟事件, 클레임(請求權)의 發行 내지 課徵金이나 稅金追徵金등의 發生에 따른 偶發事件을 말 한다. 우리나라 企業의 경우 註釋事項으로 取扱하고 있다. 왜냐하면 訴訟등의 경우 發生可能性이 높고 또 敗訴할 確率이 높으며 損失을 推定可能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財務諸表上에서 會計處理한다면 企業의 訴訟事件推進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며, 訴訟相對方에게 企業의 弱點을 보이는 結果가 되므로 이러한 것은 註釋事項으로도 밝히려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만 公認會計士에 의한 監查時에 指摘되어 監查報告書에 註釋事項으로 表示될 뿐이다.

未提起된 訴訟이나 請求되지 않은 請求權 및 追徵金에 대하여는 ① 發生可能性程度 ② 不利한 結果의 可能性을 決定해서 會計處理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그러나 請求權이나 訴訟등이 提起될 蓋然性이 없든가 또는 請求權者가 請求할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提起하지 않은 請求權等은 偶發性이 있다 하더라도 公示할 必要가 없다.

(6) 附保되지 않은 危險事故

이러한 事故는 保險에 加入 안 한것과 偶發事件의 發生과는 別個問題로서 保險加入事件이 偶發債務가 아니 듯이 이것은 偶發債務로 公示할 必要가 없다고 본다.

(7) 他人을 위한 債務의 保證.

金融機關에서 혼히 볼 수 있는 偶發債務로 去來企業을 위하여 債務를 負擔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支給保證.

貸出擔保로 保證, 入社保證金, 社債發行 元利金支給保證, 어음保證, 施設貸與保證등이 있다.

② 信用狀開設.

外國換銀行으로서 海外 또는 國內他銀行앞으로 物品輸入 또는 購入에 따른 代金支給을 約定하는 一種의 保證(債務)이다.

③ 어음再割引과 어음擔保背書.

去來處로 부터 割引한 어음을 韓國銀行등에 再割引하는 경우의 偶發債務. 또는 買入이나 引受에 의하여 所持한 어음을 他人에게 背書하여 賣出함에 따라 負擔하게 되는 偶發債務.

④ 無擔保 및 新種企業어음(Commercial Papers)賣出.

이는 企業이 發行한 어음을 無擔保로 他人에게 賣出 또는 讓渡하는 것으로 偶發債務가 發生하지 않는다. 그러나 現實的으로는 金融機關의 公信力과 公共性때문에 辨償하기도 한다.

이러한 偶發債務는 發生의 可能性程度에 不拘하고 모두 公示도록 要求하고 있다.

5. 金融機關의 偶發債務에 대한 會計處理現況

1) 偶發 債務의 種類

金融機關의 偶發債務에 관한 會計處理現況에 대한 調查는 銀行, 短期金融會社, 綜合金融會社, 信用保證基金, 保證保險, 保險會社, 리스會社에 대하여 任意選擇하여 會計處理方法을 為主로 調查하였다.

金融機關에서 일어 날 수 있는 偶發債務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各種 支給保證에 따른 保證債務

① 一般商業銀行

가. 邦貨支給承諾 : 商業어음保證.

其他邦貨支給承諾

나. 外貨支給承諾 : 引受

銀行引受

其他外貨支給承諾

(2) 第2金融(短期投資金融 綜合金融等)

가. 원화支給保證 : 社債支給保證

어음保證

其他毛貨支給保證

나. 外貨支給保證 :

(3) 特殊銀行(韓國產業銀行等)

나. 邦貨支給保證 : 支給保證

社債保證

株式配當擔保保證

債務保證

나. 外貨支給保證 : 借款支給保證

借款引受代充

其他外貨支給保證

(4) 信用保證基金

保證承諾 :

貸出保證承諾

支給保證의 保證承諾

社債保證承諾

納稅保證承諾

어음保證承諾

第2金融承諾

施設貸與承諾

(5) 保險會社 :

保險料로 偶發債務을 引受하는 機關으로 偶發債務에 該當되는 것이 없

다. 保證保險의 경우도 一般保證과는 달리 保險料受入으로 引受하므로 保
險으로 解決된다.

(2) 信用狀(L/C)發行에 따른 偶發債務

① 銀行(特殊銀行包含)

信用狀發行

支給保證(信用狀開發關係)

② 地 2 金融(綜合金融)

信用狀發行

(3) 어음背書에 따른 偶發債務

① 銀行(一般商業銀行)

背書어음 :

擔保背書어음

無擔保背書어음

② 第 2 金融(短期金融 綜合金融)

無擔保背書어음(無擔保賣出어음)

擔保背書어음(擔保賣出어음)

(3) 還買條件附有價證券賣出에 따른 偶發債務

顧客에게 保有有價證券(社債 國公債等)을 還買條件附로 賣出

(4) 約定事項에 따른 偶發債務

借款導入待期信用約定등과 같이 外部에 履行을 約定한 것으로 未履行��에는 手數料(Commitment Fee) 등을 支給한다.

(5) 各種貸出金等 債權에 따른 偶發債務

(6) 訴訟等其他에 따른 偶發債務

2) 偶發債務의 會計處理

機關別로 會計處理方法이 計定科目名稱이 다소 다르지만 大部分이 統一된 方法을 따르고 있다. 銀行의 경우는 銀行監督院의 決算指針에 따라 統一된 方法을 따르게 되며, 其他 金融機關도 同一한 會計處理를 하고 있다.

(1) 貸出金等 債權에 대한 偶發損失의 計上

貸出金等 債權에 대한 貸損金發生의 偶發損失은 一般企業의 會計處理와 같이 貸損豫想損失을 偶發損失로 認識하고 偶發債務인 貸損充當金을 設定한다. 이 點은 우리나라 企業會計基準 또는 美國이나 國際會計基準에서 定한 바와 同一한 方法으로 財務諸表本文에 計定殘額으로 表示하고 있다. 그리고 貸借對照表에 表示되는 偶發債務인 貸損充當金은 類似한 科目別로 分類되어 該當資產計定科目에서 差減表示하는 金融機關은 短期金融會社 綜合金融等 第 2 金融會社(保險社包含)이며 銀行의 경우에는 一括하여 充當金으로 貸借對照表貸邊에 表示하고 있다.

貸損豫想되는 偶發損失에 대하여 合理的推定可能額算出에 있어 稅法이나 決算指針(銀行為 경우)에 따라 一率的으로 一定率을 適用하여 表示하기 때문에 真正한 偶發債務를 表示하는

貸損充當金이라고 보기 힘들다. 貸出金의 內譯을 分析하고 過去의 經驗率, 現狀, 擔保取得狀態 등을 參考하여 合理的 推定額을 貸損充當金으로 表示해야 財務諸表利用者가 有用한 情報를 얻을 수 있다. 特히 貸出金中에 問題가 있는 長期不實債權이나 期日經過어음(不渡어음등)에 대하여 公示가 不充分하며 이에 대한 註釋이 전혀 안 되고 있다.

(2) 支給保證(承諾)에 대한 偶發債務의 表示

金融機關이 他人 앞으로 去來處의 信用을 保證한 것으로 保證目的에 따라 科目을 區分表示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保證債務에 대한 偶發債務는 단지 偶發性이 있다는 것만을 뜻하도록 會計處理하고 있다. 偶發債務은 偶發損失(loss contingency)의 計上에 따른 相對債務가 真正한 뜻이었으나, 우리나라 金融機關 (信用保證基金除外)은 支給保證에 대한 偶發債務은 偶發損失을 計上한 結果로 推定된 偶發債務가 아니다. 單只 總支給額을 對照計定 (Contra Account)에 의하여 兩立計定으로 貸借對照表에 만 다음과 같이 表示하게 된다.

支給保證時 :

支給保證(承諾)代充	× × ×	支給保證(承諾)	× × ×
------------	-------	----------	-------

支給保證解止時 :

支給保證(承諾)	× × ×	支給保證(承諾)代充	× × ×
----------	-------	------------	-------

이와 같이 支給保證現殘額을 貸借對照表本文에 殘額으로 對照表示하고 있다. 그러나 本支給保證에 대하여 信用保證基金에서는 貸損豫想額을 偶發損失로 計上하고 貸損充當金이란 偶發債務를 別途로 一括表示하고 있다. 이와 같은 偶發債務인 貸損充當金과는 別途로 支給保證總額에 대하여는 他金融機關과 같이 對照計定으로 表示한다.

한편 公示方法에 있어 第 2 金融會社에서는 財務諸表本文에 計定殘額으로 表示하지 않고 財務諸表欄外에 註記事項으로 表示하고 이에 대한 說明을 하고 있다.

이러한 保證에 있어서도 擔保取得으로 偶發性이 미약한 것과 信用으로 支給保證한 것과의 區分表示를 하면 財務諸表util者에게 보다 有用한 情報가 提供될 것이다.

(3) 信用狀發行(開設)에 따른 偶發債務

去來處의 要請에 의하여 所定의 節次에 따라 信用狀을 發行 또는 開設했을 경우 海外相對銀行에 대하여 負擔하는 偶發債務를 表示하는 것으로 支給保證의 경우처럼 兩立計定인 對照計定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會計處理하고 있다.

信用狀發行時 : 信用狀發行代充	× × ×	信用狀發行	× × ×
------------------	-------	-------	-------

信用狀決済時 : 信用狀發行	× × ×	信用狀發行代充	× × ×
----------------	-------	---------	-------

銀行의 경우나 第 2 金融會社나 會計處理는 同一하여 偶發損失計上敘이 單純히 對照表示에 의하여 偶發債務를 나타낸다. 이 경우는 財務諸表本文에 計定殘額으로 表示되는 支給保證과는 달리 貸借度照表欄外에 脚註로 金額만 表示된다. 이에 대한 註釋은 더 以上 necessary치 않

은 관계로 記述式 說明을 하지 않고 있다.

(4) 背書어음에 따른 偶發債務

金融機關이 保有어음 또는 企業이 發行한 어음을 顧客에게 賣出함으로 背書讓渡하는 것으로 背書責任을 金融機關이 負擔하는 擔保附背書어음과 背書責任을 負擔하지 않는 無擔保背書어음이 있다. 이러한 어음에 대하여도 偶發損失을 計上하지 않고 單純히 兩立計定인 代充計定으로 對照表示한다.

그리고 公示의 方法은 모두 貸借對照表本文의 計定殘額으로 表示하지 않고 貸借對照表欄外에 註釋으로서 金額을 擔保背書어음(擔保賣出어음), 無擔保背書어음(無擔保賣出어음)으로 區分하여 一括表示하고 있다.

(5) 還買條件附有價證券賣出에 따른 偶發性

保有有價證券을 還買條件附로 顧客에 賣出하는 것은 偶發損失이 發生될 可能性은 없으나 다만 企業經營上 營業活動에 制約要因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財務諸表本文에 表示하지 않고 註釋事項으로도 表示하지 않고 있다.

一般銀行이나 短資會社에서는 이에 대한 公示가 없으나 外國金融機關과 合作한 一部綜合金融會社에서는 註釋으로 公示하고 있다.

(6) 訴訟등 其他 偶發事件에 대한 偶發性의 表示

모든 金融機關이 訴訟이라든가 其他 偶發事件에 대하여는 財務諸表에는 勿論 註釋事項으로 이를 公示하고 있지 않은 實情이다. 다만 公認會計士 監查報告書에 一部 註釋事項으로 公示되고 있을 뿐이다.

其他 偶發事件으로서 貸借對照表에 表示되는 것으로는 資產再評價에 따른 未支給 資產再評價稅의 金額이 擔當額으로 이를 貸借對照表欄外에 脚註로서 “未支給資產再評價稅”를 記入하는 銀行이 있다.

6. 結論

會計의 機能은 씨비스活動이라고 한다. 會計에 관한 情報를 財務諸表利用者에게 옳바로 提供하여 이들의 合理的 意思決定을 돋는 씨비스의 一環이 會計의 役割이다. 그렇다면 會計情報은 財務諸表등에 의하여 正確한 內容을 測定하여 正確하게 傳達하지 않으면 안 된다.

偶發損失에 따른 偶發債務에 대하여는 特히 誤解하지 않도록 그 發生可能性을 慎重히 檢討하여 利害關係者の 有用性을 念頭에 두고 充分한 內容을 誠實하게 公示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基準은 이미 美國의 AICPA나 國際會計基準 委員會가 定한 規程을 바탕으로 外面的으로는 그 精神을 받아 들여 偶發事件에 대한 會計處理에 있어 註記

또는 註釋事項으로 公示토록 制度를 갖추어 놓고 있다.

金融機關의 實態에서도 살펴 봤다 싶이 偶發性에 대한 發生可能性이나 推定損失額의 表示는 없이 單純한 對照計定으로서 그 偶發債務만 表示하고 있을 뿐이며 事實上 與信의 一種인 保證에 대하여는 貸損充當金設定과 같은 損失로써 合理的인 推定金額을 計上해 볼만도하나 이에 대한 偶發損失의 推定없이 對照表示만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特別한 註釋事項으로 說明이 안 되고 있으며 外國과 合作하고 있는 金融會社에서는 明瞭한 註釋事項을 年次報告書에 表示하고 있으나 國內銀行의 年次報告書에는 銀行監督院에서 定한 計定科目과 貸借對照表 作成樣式에 따라, 참다운 内容이 담겨 있지 않은 形式的인 財務報告를 하고 있다. 附屬明細書에서도 偶發債務에 대하여는 別다른 明細내지 公示가 없었다.

이는 外國金融機關과 合作한 金融會社以外 他金融會社(銀行包含)와 一般企業에서도 찾을 수 있는 現象으로 아직까지는 偶發損失과 債務에 대하 一般大衆을 包含한 財務諸表利用者들의 認識이 안 됨에 그 理由가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偶發債務에 대한 재무제표 이용 자들의 認識이 向上되면 企業도 이에 呼應하여 좀 더 詳細한 公示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會計監查報告書에 公認會計士들의 職務遂行上表現되는 데 不過한 단계이다.

앞으로 偶發債務와 偶發損失의 會計處理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點을 考慮하여 會計實務에導入함으로서 形式에서 脫皮하여 좀 더 實効性있게 偶發債務에 대한 會計處理가 會計實務에 定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① 現在와 같은 單純한 對照表示에서 發展하여 合理的인 偶發損失의 推定에 따른 偶發債務의 表示
- ② 偶發損失의 推定에 外部規程에 無條件,一律的으로 따르지 말고 實質되고 實質的인 損失의 計上(不實貸出判定基準의 마련)
- ③ 財務諸表utilization者를 위한 偶發事件의 充分한公示